

울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0
----------	------

발의연월일 : 2018. 11. 30.

발 의 자 : 노세영, 박채연, 박경흠
문희성,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1. 제정이유

- 가. 이 조례는 우리구의 의료관광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 나. 의료관광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안 제4조 목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나. 안 제5조~안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의 임기, 기능, 회의 수당 지급 등 규정
- 다. 안 제10조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 라. 안 제11조~안 제14조 홍보 및 마케팅, 홍보대사 운영, 관련기관 협조 요청 등을 규정

3. 근거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과목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2018. 11. 30 ~ 12 . 7.
- 나. 성별영향 평가 및 비용추계서 : 별지참조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외국인환자를 구 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를 유능한 의료진과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제211회-행정자치위제9차부록)

② 기본계획에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자치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1. 의료관광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2. 의료관광 관련 홍보·마케팅 전문가
3. 국내 의료에의 영향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대표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민원 야기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3. 제9조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상품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 위원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에 관한 사업
- 2.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운영 및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 등 외국인 환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
- 3.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

6 (제211회-행정자치위제9차부록)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의료관광 사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7. 의료서비스 국제인증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1조(의료관광 홍보·마케팅 등)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의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 할 수 있다.

제12조(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홍보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에 적합한 사람을 구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에 출석,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